|  |  |  |
| --- | --- | --- |
|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2011년**  **개정) 집행 관련사항에 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2년 제4호  2011년 12월 2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제12호 령으로 공동으로《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2011년 개정)》(이하《외자목록(2011년 개정)이라 함, 첨부 참조)을 반포하고 2012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 해관의 집행중의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2012년 1월 30일부터《외자목록(2011년 개정)》장려부류에 속하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증자프로젝트 포함)의 투자총액 내 수입 자사용 설비와 계약에 따라 상술한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기술과 부품, 비품은《외국인투자프로젝트 면세불허 수입상품목록》과《면세불허 수입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목록》에 편입된 상품을 제외하고는《수입설비 조세정책 조정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 [1997] 37호), 해관총서 공고 2008년 제103호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며, 수입단계증치세는 규정에 따라 계속 징수한다.  2. 《외자목록(2011년 개정)》을 시행한 후《프로젝트확인서》중의 "프로젝트 산업정책 심사비준 조목" 번호는 M으로 한다. 예를 들면,《외자목록(2011년 개정)》 중 장려부류의 제1류 1항은 목본식용유료, 조미료 및 공업원료의 재배와 개발, 생산(M0101)으로 작성해야 하며, 제3류 제(1)조 1항은 바이오사료, 짚 사료, 수산물사료의 개발, 생산(M030101)으로 작성해야 한다.  3. 정책의 연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2년 1월 30일 전(1월 30일 미포함, 하동)에 심사비준, 허가 또는 비안(備案) 수속을 완료한 외국인투자프로젝트(프로젝트의 심사비준, 허가 또는 비안(備案) 일에 준함, 하동)가《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2007년 개정)》의 장려부류에 속하는 경우에는 계속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 면제수속을 밟을 수 있다. 다만 관련 프로젝트단위는 2013년 1월 30일 전에 투자주관부서에서 발급한 《프로젝트확인서》(그중 "프로젝트산업정책 심사비준 조목"은 여전히 기존 심사비준 조목과 번호에 따라 작성)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해관에서 감면세 비안(備案)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간이 지난 후 해관은 상술한 감면세 비안(備案) 신청을 더 이상 수리하지 아니한다.  2012년 1월 30일 전에 심사비준, 허가 또는 비안(備案) 수속을 완료한,《외자목록(2011년 개정)》 장려부류에 속하는 외국인투자프로젝트는 투자주관부서에서 《외자목록(2011년 개정)》 산업정책 조목에 따라 《프로젝트확인서》(그중 "프로젝트 산업정책 심사비준 조목"은 "M"으로 작성) 발급하였다면 해관은 이를 수리할 수 있다.  4.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2007년 개정)》에 편입되지 않은 건설중인 외국인투자프로젝트는《외자목록(2011년 개정)》의 장려부류에 속하기만 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주관부서에《프로젝트확인서》보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프로젝트확인서》를 취득한 후 건설중인 프로젝트로 수입하는 자사용 설비와 계약에 따라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기술과 부품, 비품은 이 공고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 조세우대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수입설비 세금을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공고한다.  첨부: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  (2011년 개정)  2012년 1월 29일 |  | **关于执行《外商投资产业指导**  **目录（2011年修订）》有关事宜**  海关总署公告2012年第4号    　　2011年12月24日，国家发展改革委、商务部以第12号令联合公布了《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1年修订）》（以下简称《外资目录（2011年修订）》，详见附件），并规定自2012年1月30日起施行。现就海关执行中的有关问题公告如下：  　　一、自2012年1月30日起，对属于《外资目录（2011年修订）》鼓励类范围的外商投资项目（包括增资项目），在投资总额内进口的自用设备以及按照合同随上述设备进口的技术和配套件、备件，除《外商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和《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所列商品外，按照《国务院关于调整进口设备税收政策的通知》（国发〔1997〕37号）、海关总署公告2008年第103号及其他相关规定免征关税，照章征收进口环节增值税。  　　二、《外资目录（2011年修订）》实施后，《项目确认书》中的“项目产业政策审批条目”编码为“M”，例如，《外资目录（2011年修订）》中鼓励类的第一类第1项应填写为：木本食用油料、调料和工业原料的种植及开发、生产（M 0101）；第三类第（一）条第l项应填写为：生物饲料、秸秆饲料、水产饲料的开发、生产（M 030101）。  三、为保持政策的连续性，对2012年1月30日以前（不含1月30日，下同）审批、核准或备案的外商投资项目（以项目的审批、核准或备案日期为准，下同），属于《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07年修订）》鼓励类范围的，可继续按照规定办理免征进口关税手续。但有关项目单位须于2013年1月30日以前，持投资主管部门出具的《项目确认书》（其中“项目产业政策审批条目”仍按原审批条目及编码填写）等有关资料向海关申请办理减免税备案手续。逾  期，海关不再受理上述减免税备案申请。  　　对于2012年1月30日以前审批、核准或备案，同时属于《外资目录（2011年修订）》鼓励类范围的外商投资项目，投资主管部门按照《外资目录（2011年修订）》的产业政策条目出具《项目确认书》的（其中“项目产业政策审批条目”以“M”为编码），海关可予受理。  　　四、对于未列入《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07年修订）》的外商投资在建项目，凡符合《外资目录（2011年修订）》鼓励类范围的，可按有关规定向投资主管部门申请补办《项目确认书》。在取得《项目确认书》之后，在建项目进口的自用设备以及按照合同随设备进口的技术和配套件、备件，可参照本公告第一条的规定享受进口税收优惠政策，但进口设备已经征税的，税款不予退还。  　　特此公告。  　　附件：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1年修订）  　　　　　　　　　　　　　　　　 二○一二年一月二十九日 |